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53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이준석 · 천하람 · 이주영
김용태 · 김재섭 · 이종배
김대식 · 조정훈 · 김도읍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높아지고 있으나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으로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시행되는 등 베이비시터에 대한 공적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 및 육아부담 완화를 위하여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0항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8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제5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5항 및 제8항”을 “제5항·제8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

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⑧ 제1항· <u>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 ⑨ (생 략) <u><신 설></u>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u>제4항·제5항 및 제10항-----</u> ----- ----- ----- ----- ----- -----. ⑨ (현행과 같음) ⑩ <u>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비용(「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정한다)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u>

⑩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 공제”라 한다. ⑪ (생략)	<u>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u> ⑪ -----제5항·제8항 및 제10항----- -----.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	---